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구조행위자 등 대상자 확대 〉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809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구조행위자 등 대상자 확대	3

I. 개요

1.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80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5. 6.
- (3) 회 부 일 : 2026. 5. 7.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부상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의상자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6항 등).
- 2)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한 사람 중 의사자나 의상자가 아닌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인정하고 영전의 수여,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호,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 등).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 6. (생략)

<신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2. -----

-----신체

적·정신적 손상-----

3. -----

-----신

체적·정신적 손상-----

4. ~ 6. (현행과 같음)

7. “구조행위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한 사람 중 의사자나 의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구조행위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1. -----

----체포하기 위한-----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u>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u> 구조행위를 한 때	2. ----- ----- ----- ----- <u>구하기 위한</u> ----- -----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u>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u> 구조행위를 한 때	3. ----- ----- ----- ----- <u>구하기 위한</u> -----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u>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u> 구조행위를 한 때	4. ----- ----- ----- ----- <u>조치를 하기 위한</u> ----- -----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u>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u> 구조행위를 한 때	5. ----- ----- ----- ----- <u>구하기 위한</u> ----- -----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6. ----- -----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구하기
위한-----

7. -----

-----신체적·
정신적 손상-----

8. -----

-----구하기 위한-----

② -----

-----.

1. -----

-----한-----

2. -----

되어 사망하거나 <u>부상</u>을 입은 사람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u>의사상자</u>의 인정 및 의상자의 <u>부상등급</u>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의상자의 <u>부상등급</u>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략) 4. <u>의사상자</u>·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5. <u>의사상자</u>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생략) ② ~ ⑤ (생략) 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	-----<u>신체적·정신적 손상</u>-----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 ----- ----- ----- -----. 1. -----<u>의사상자</u> 또는 <u>구조행위자</u>-----<u>손상등급</u>----- 2. -----<u>손상등급</u>----- 3. (현행과 같음) 4. <u>의사상자</u>·<u>구조행위자</u>·의사자유족----- 5. <u>의사상자</u>·<u>구조행위자</u>-----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인정신청 등) ① ----- ----- ----- ----- ----- ----- -----
---	---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 ·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의사상자
또는 구조행위자-----.

② -----

-----의사상자 또는 구조행위자-----
-----.

③ -----

-----의사상자
또는 구조행위자-----
-----.

④ (현행과 같음)

⑤ -----

-----의사상자 또는
구조행위자-----
-----.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①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제5조제6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 및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의 신청절차 및 인정 여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조(영전의 수여 등)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

-----.

⑥ -----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
-----손상등급-----
-----.

제6조(손상등급 변경신청) ① -----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손상등급-----

-----손상등급-----
-----.

② -----
-----손상등급-----

-----.

제7조(영전의 수여 등) -----의
사상자 및 구조행위자-----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① (생략)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
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
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
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
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
다.

③ (생략)

제9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제8
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
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상

-----.

제8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신체적·정
신적 손상-----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의사상자 또
는 구조행위자-----의사상자 또
는 구조행위자-----
의상자, 구조행위자 또는 의사
자유족-----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

-----의상

<u>자</u>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생 략) 제11조(의료급여) ①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u>신체상의 부상</u>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u>신체상의 부상</u>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	<u>자 또는 구조행위자</u>-----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료급여) ① ----- ----- ----- -----. ----- -----<u>신체적·정신적 손상</u>-----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교육보호) ----- ----- ----- ----- -----. -----<u>신체적·정신적 손상</u>----- -----. 제13조(취업보호) ----- ----- -----
--	---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u>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그 가족은</u>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u>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u> 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애보호는 <u>의사상자 인정결정</u>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u>날을 말한다</u>)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 -----<u>신체적·정신적 손상</u>-----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u>의상자·구조행위자·의사자유족</u> ----- ----- ----- ----- ----- ----- -----.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 ----- ----- ----- ----- ----- -----<u>의사상자·구조행위자 인정결정</u>----- ----- ----- ----- -----<u>날, 제6조에 따른 손상등급 변경결정이 있었던 경우 변경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을 말한다</u>-----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그 인정 여부는 현행법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됨.¹⁾

- 의사상자 인정 현황을 보면, 현행법이 시행된 1970년²⁾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사자는 551명, 의상자는 355명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의사상자 인정 현황 >

(단위: 건)

연도	'71~'18	'19	'20	'21	'22	'23	'24	'25	'26.5월	계
계	789	18	11	21	17	24	10	11	5	906
의사자	508	8	5	10	2	8	3	6	1	551
의상자	281	10	6	11	15	16	7	5	4	355

자료: 보건복지부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5.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1970.8.4. 제정, 1970.8.4. 시행)

□ 현행법은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하여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무상 구조행위를 한 경우나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였더라도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인정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별도의 ‘구조행위자’로 인정하여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상의 인정 기준이 되는 부상의 범위에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상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먼저, 구조행위자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의로운 행위에 상응하는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구조행위 과정에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의사상자 제도는 단순히 구조행위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의로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모든 구조행위자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희생의 정도

가 인정된 의사상자에 한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원 대상을 의사상자에서 구조행위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 범위의 조정이 아니라, 의사상자 제도의 목적과 성격을 ‘희생에 대한 보상’에서 ‘구조행위에 대한 포상·장려’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지원 수준, 재정 소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 목적과 지원체계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구조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구조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의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³⁾.

□ 다음으로 정신적 손상에 대한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2조 제3호⁴⁾는 의상자를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⁵⁾에서는 부상의 범위에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제한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 체계에서도 구조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손상에 대하여 의상자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3) (민간)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적 반향과 공감을 일으킨 사람(포상금)
(지자체·경찰) 인명구출, 재난방지, 현행법 검거 등(위로금, 감사패)
(소방)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의사상자를 제외한 사람(표창, 부상품)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5) p.18 참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 현황을 보면, 구조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의상자 부상으로 인정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한데, 이는 정신적 손상에 대한 인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거나,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정신적 손상을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정신적 손상을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단순히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가 보호하고 보상해야 할 손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도의 해석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질적인 보상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정신적 손상의 특성상 객관적인 입증과 인과관계 판단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인정 범위와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현행법에서 정신적 손상 관련 부상등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타 법률에서도 정신적 손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또한, 구조행위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의사상자 제도의 영예성 및 제도 취지, 타 기관의 의로운 시민 지원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제2조 관련)

등 급	부 상 의 정 도
제1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6.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2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8. 두 손의 손가락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 발의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3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1. 한 다리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제4급	1. 한 눈이 실명[맹(盲)·광각상실(光角喪失)]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이나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나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인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3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6급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과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쇠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경미한 흉터가 남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펴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제8급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펴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제9급	타박상, 열상, 찰과상, 부분화상, 골절, 탈골, 뺨, 인대손상, 3개 미만의 치아보철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

- 비고 : 1. 위의 표에 규정된 신체의 부상이 두 가지 이상(제7급, 제8급 및 제9급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등급(그 부상이 모두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말한다)의 1등급 위의 등급을 그 의사자의 부상등급으로 하되, 제1급을 최고등급으로 한다.
2. 위의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의 표에 규정된 부상에 준하여 그 부상등급을 결정한다.